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한나라당 조세정책

2006. 11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들어가며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2006년 정기국회에서 소외계층과 서민 생활 안정, 성장촉진과 일자리창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조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12개 항목의 조세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층 분석하여 특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사항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은 ‘성장촉진, 복지확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을 기조로 하는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그 기조는 경제선진화라는 큰 틀 안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번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조세정책 역시 지난해 밝힌 조세정책의 4대 원칙과 5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과 「2006년도 예산안」, 「비전 2030」은 경제 활성화보다는 무분별한 재정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합되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보다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금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하고 조세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국가경영에 있어 ‘큰 시장, 작은 정부’ 를 기조로 삼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관행을 선진화하는 것이야말로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 안전의 물적 기반을 갖추는 지름길이다.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평하게 분배하며, 자원배분에 대한 조세의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초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2개 조세 정책을 입법하고, 정부의 2006년 세제개편안의 중요한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당면한 경제난국의 타개에 이바지하고 조세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1월 10일

< 목 차 >

I.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한나라당 조세정책	1
II. 소외계층을 위한 조세정책	4
1.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4
2.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5
III. 서민생활 안정과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정책	6
1.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및 특별공제 자영업자로 확대	6
2.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14%→10%)	8
3.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 신설	9
4.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10
IV. 성장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11
1. 소득세율 2% 인하	11
2. 법인세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투자의욕 고취	13
3.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	14
V.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	15
1. 양도소득세 정상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방법 개선	15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상향 및 과세방법·납부방식 개선	17
3. 등록세 폐지를 통한 거래세 부담 경감	18
VI. 2006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및 입장	21
1.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문제	21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및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 문제	21
3. 임시투자세액공제 문제	22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문제	22
5.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문제	23
6.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문제	23
7. EITC 도입 문제	24
8. 성실납세제도(간편납세제도) 도입 문제	24
<별첨>	25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활동상황(2006. 8 ~)	25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의원 명단(2006. 11. 10 현재)	26

I.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한나라당 조세정책

1.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

■ 기본철학

- 조세정책은 경제성장과 선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함
- ‘작은 정부, 큰 시장’ 을 지향함
- 분명한 원칙에 따른 근본적인 조세정책의 혁신을 추구함

■ 4대 원칙

- (1) 단순성 : 조세제도는 단순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워야 한다.
- (2) 효율성 :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선택이 세금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 (3) 형평성 : 조세부담은 부담능력과 정부 서비스 혜택에 비례하여 공평해야 한다.
- (4) 경제성 : 제도가 알기 쉽고 편리하여 납세순응비용과 징세행정비용이 적어야 한다.

■ 5대 기본 방향

- (1) 과학적 세원관리와 감면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및 한계세율 인하
- (2)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으로서 조세정책 남용 지양
- (3) 자산의 거래·이전에 대한 조세의 장기적 폐지
- (4)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의 역할분담 조정과 제도 통폐합 추진
- (5) 조세관련 통계의 확충

2. 2006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2대 조세정책

■ 소외계층을 위한 조세정책

- (1)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 (2)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 서민생활 안정과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정책

- (1)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및 특별공제 자영업자로 확대
☞ 세원 양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추진
- (2)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14%→10%)
- (3) 무주택자 소득공제(100만원) 신설
- (4)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 성장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 (1)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세율 2% 인하
- (2)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 3% 인하
- (3)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

■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조세정책

- (1) 양도소득세 정상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방법 개선
-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상향 및 과세방법·납부방식 개선
- (3) 등록세 폐지를 통한 거래세 부담 경감

3. 200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1)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보다는 한나라당의 인적공제 100%인상(1인당 100만원→200만원) 방안이 더 합리적
-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및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함
- (3) 세율인하가 수반되지 않은 증세 목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투자활성화에 역행함
- (4) 세율인하 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및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축소는 세부담 증대와 투자의욕 감퇴를 유발함
- (5) 성형수술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세원양성화에 대한 실효성은 없고 사회적 부작용만 남음
- (6) 직불(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동일하게 20%로 인상해야 함
- (7)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도입은 소득과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성실소득신고 관행의 미비로 시기상조
- (8) 정부가 제안하는 소위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근거과세 기반을 약화시키고 세원양성화에 역행함

II. 소외계층을 위한 조세정책

1.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 추진배경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 인상액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니라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매년 예산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내용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함

□ 정책효과

-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됨
-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소득보전정책
- 세수손감소분(정부부담금 상쇄 후)은 2007년 기준 527억원으로 추산됨
 - ※ 527억원은 2004년 기준 금액대비 연간 7%(명목GDP 상승률, 단 2005년 실적은 3.5%) 증가를 기초로 산정됨 : $445\text{억원} \times 1.035 \times 1.07^2$)

□ 추진 경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 추진배경

경기침체와 지하철 및 버스의 확충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업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만으로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 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음

□ 내용

(영업용택시) 택시운송사업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 세수입감소효과 : 연간 약 2,400억원

□ 정책효과

택시노동자 및 택시업계가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추진 경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박계동 의원 대표발의)

III. 서민생활 안정과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정책

1.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및 특별공제 자영업자로 확대

□ 추진배경

- 4인가족 최저생계비 年 1,404만원 (月 117만원, 2006년 기준)
- 4인가족 면세점은 年 460만원 (인적공제 1인당 1백만원, 표준공제 60만원)
- 고소득자(의사, 변호사 등) 탈세 문제는 조세행정상의 문제인데 이로 인해 세법구조가 왜곡되고 성실납세자들까지도 탈세자 취급을 당하는 기형적 구조 고착
- OECD, EU 회원국들 중 근로자와 사업자간 면세점의 차이가 한국처럼 극심한 사례는 없음
- 신용카드 활성화, 특례과세제도 개선 등으로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 달성

☞ 4인가족 기준 면세점

-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시 근로자 1,500만원, 사업자 460만원
- 연금보험료 등 고려시(정부발표) 근로자 1,582만원, 사업자 482만원

☞ 재정경제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과약 강화 등 2006년 세제개편안에 다수의 세원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내용

- 인적공제 2배로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 근로소득공제는 적정규모로 축소(근로자의 경우 세수중립 유지)
- 종합소득자의 표준공제(현행 60만원)를 근로소득자 수준인 100만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를 종합소득자에게 확대 적용

□ 정책효과

- 사업자의 면세점 460만원 → 900만원으로 증가(현행의 약 2배)
→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탈세 동기를 줄여 줌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 경감이 많아짐(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합)
- 면세점 상향조정에 따른 감세효과는 2007년 기준 약 9,9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됨
※ 9,900억원은 2004년 기준 금액대비 연간 7%(명목GDP 상승률, 단 2005년 실적은 3.5%) 증가를 기초로 산정됨 : $8,300\text{억원} \times 1.035 \times 1.07^2$
-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자영업자로 확대하는데 따른 감세 효과는 2007년 기준 약 7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됨

<참고>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 약 1,200억원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약 2,6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약 3,200억원

□ 추진 경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14%→10%)

□ 추진배경

- 현행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세율(14%)은 소득세 최저세율(8%)에 비해 매우 높아 국민들의 세부담이 과중함
-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은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을 통한 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내용

-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10%로 인하

□ 정책효과

- 국민의 이자·배당소득세 세부담 감소 및 그에 따른 저축의지 고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고령은퇴자의 세부담 완화
- 감세효과는 2007년 기준 1조원으로 추산됨

※ 분리과세 세율 1%p 인하 시 △2,500억원, 4%p 인하 △1조원

□ 추진 경과

소득세법 개정안 2006년 정기국회 중 제출 예정

3.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 신설

□ 추진배경

-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또한 임대주택시장인 전세주택시장의 붕괴는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음
- 따라서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내용

-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100만원의 ‘무주택 소득공제’ 신설
 - ※ 단서조항 : 소득기준으로 년 2,400만원 이하, 재산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정책효과

- 주택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됨
- 세수 감소분은 2,600억원 미만으로 예상
(2007년 기준 최대 5조 300억원 가량의 과세표준 감소 예상)

- ※ 소득기준 2,400만원 이하 과세자가 100% 세대주이고, 100% 무주택자이며, 재산 2억원 이하로 가정
소득세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503만명(2004년 귀속분 기준, 국세통계연보)
소득세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평균세율 5.1%(2004년 귀속분 기준, 국세통계연보로 추계)

□ 추진 경과

소득세법 개정안 2006년 정기국회 중 제출 예정

4.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 추진배경

- 경형 승합차와 경형 화물차는 중소기업자들의 생계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차량임
-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을 뿐 경형 승합차와 경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없음
- 실제 대표적인 경형 승합차와 경용 화물차의 가격이 경형 승용차보다 낮고, 이들 차종이 서민의 생계 수단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내용

경형 승합차와 경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형 승용차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부여

□ 정책효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

□ 추진 경과

지방세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IV. 성장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1. 소득세율 2% 인하

□ 추진배경

-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경제의 양극화 현상 심화, 중산층 붕괴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 추구

- 소득세율 인하 및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양성화 지속적 추진 필요

- 급증하는 서민부담의 완화

조세부담율 1997년 18.0% → 2005년 20.3% (2.3%↑)

국민부담율 1997년 21.0% → 2005년 25.7% (4.7%↑)

※ 국민부담율 = (조세부담 + 사회보장기여금) / 명목 GDP

□ 내용

- 현행 소득세율 8%, 17%, 26%, 35% → 6%, 15%, 24%, 33% (각 2%↓)

과세표준 계급구간	현행	변경 후
1천만원 이하(A)	8%	6%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	15%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26%	24%
8천만원 초과(B)	35%	33%
누진도(B/A)	4.4	5.5

□ 정책효과

- 서민경제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소비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근로의욕 및 저축·투자의욕 고취

· 감세 효과는 2007년 기준 약 2조 9천억원으로 추산됨

※ 2조 9000억원은 2004년 기준 금액대비 연간 7%(명목GDP 상승률, 단 2005년 실적은 3.5%) 증가를 기초로 산정됨 : 2조 4,600억원 \times 1.035 \times 1.07²

□ 추진 경과

소득세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 법인세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투자의욕 고취

□ 추진배경

- 경제 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반 붕괴
-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의지 고취

□ 내용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로 변경
- 최저한세율 인하 : 현행 대기업 15%(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13%, 중소기업 10%)
→ 중소기업만 8%로 인하

□ 정책효과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감세 효과는 2007년 기준 약 1조원 내외로 추산됨
 - ※ 1조원은 2004년 기준 금액대비 연간 7%(명목GDP 상승률, 단 2005년 실적은 3.5%) 증가를 기초로 산정됨 : $8,500\text{억원} \times 1.035 \times 1.07^2$

□ 추진 경과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3.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는 물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제 금융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액공제만을 허용하고 있음

□ 내용

- 세액공제의 기준은 강화(60일→30일)하되 공제액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 혜택을 줌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시한을 삭제
- 세액공제 금액을 대기업에 대하여는 1천분의 4,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천분의 5로 함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어음 결제분 세액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네트워크론제도 이용 기업- 30일 이내 결제분 : 0.3%- 30일~60일 결제분 : 0.15%○ 적용시한: 2008년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어음 결제분 세액공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이내 결제분으로 한정- 대기업: 0.4%- 중소기업: 0.5%○ 적용시한 삭제

□ 정책효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함

□ 추진 경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V.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

1. 양도소득세 정상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지난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자에게 50% 이상의 고율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과중함. 이는 몰수적 조치라 할 것임
- 주택임대사업자와 2~3주택 보유자 모두 주택임대시장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주택임대업자와 2~3주택 보유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cf)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문제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나 2~3주택 보유자나 차별이 없음.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함

※ 주택임대사업자 기준(임대주택법)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현행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이 아닌 양도시점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오랜 기간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세방법임

□ 내용

-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폐지

(예) 3년 보유자와 10년 보유자의 세부담 비교(3억원 양도차익 발생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보유연수	연간 양도차익	적용세율	연간 세액	양도소득세액
3년 보유자	3억원	3년	1억원	최고 36%	2,430만원	7,290만원
10년 보유자	3억원	10년	3천만원	최고 18%	450만원	4,500만원

(예) 5년 보유자의 세부담 비교(2억원과 5억원의 양도차익 발생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보유연수	연간 양도차익	적용세율	연간 세액	양도소득세액
5년 보유자	2억원	5년	4천만원	최고 18%	630만원	3,150만원
5년 보유자	5억원	5년	1억원	최고 36%	2,430만원	1억 2,150만원

□ 정책효과

- 보유기간에 따른 조세부담 형평성 확립으로 장기보유 할수록 유리한 양도소득세 체계 구축
- 감세효과는 2007년 기준 6천억원 ~ 9천억원으로 예상

※ 2006년 양도소득세 세입 예상 7조 524억원(예산 대비 2조 3천억원 증가)

2006년도 1세대 2주택자 50% 종과 예외.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을 기준으로 약 8.6% 감세 효과

□ 추진 경과

소득세법 개정안 2006년 정기국회 중 제출 예정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상향 및 과세방법·납부방식 개선

□ 추진배경

- 지난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인해 국민 세 부담 급격한 증가 예상
 - ※ 2005년 종합부동산세 세수입 4,413억원(분납 2천억원 불포함)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예상 세수입 1조 1539억원으로 전년대비 161.5% 증가 예상
- 세대별 합산은 위헌소지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이 매우 큼

□ 내용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전환
-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감면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식을 신고납부 방식에서 부과납부 방식으로 전환

□ 정책효과

-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 방지 및 위헌요소 제거
- 감세 효과는 2007년 기준 7천억원으로 예상됨
 - ※ 2007년 종합부동산세 예산 1조 9천억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율 2006년 70%, 2007년 80%
 - 공시가격 상승율 9억원 초과 29.2% 상승<건교부>

□ 추진 경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3. 등록세 폐지를 통한 거래세 부담 경감

□ 추진배경

-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자산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억제(동결효과)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림. 자산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거래세, 수수료 등)이 최소화 되어야 함
-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담세능력, 정부서비스 혜택과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존립의 이론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금임
- 거래빈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임
-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의 부침에 세수입이 연동되어 움직이므로 지방세 세수입의 불안정성을 높임
- 등록업무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등록세를 지방세로 징수
-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율 중 주택 거래와 기타 거래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내용

- 등록세를 폐지하되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은 현행 유지)
⇒ 2010년 등록세 완전 폐지, 등록세 폐지와 함께 주택에 대한 취득세 2%로 환원

□ 정책효과

- 등록세 폐지 효과
 - 지방세제 합리화, 거래세의 실질적인 하락으로 자산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
 - 법인등기(설립, 증자, 합병 등 자본금증가)에 대한 등록세 폐지(연간 약 2천억원)로 자본비용 경감과 기업의 활력 증대(창업, 사업 확장, 구조조정, 기업투자 등)
- 감세효과는 2007년 기준 1조 2천억원으로 예상됨
 - : 주택거래를 제외한 등록세 약 1조원 감소 예상
 - 등록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본세의 20%) 약 2,000억원 감소 예상

※ 2005년 등록세 세수입 6.8조원

(부동산 정책에 의한 과다 거래를 감안 6조원 정도가 적정 등록세 세수입)

부동산 취득세 중 주택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40%, 기타거래 60%

2006년 9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각 1%로 인하

cf) 지방교부세율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쇄 지방재정교부율	0.56%	0.77%	0.99%	1.53%	1.00%
상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0.53%	0.68%	0.82%	0.97%	0.90%

□ 추진 경과

지방세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 등록세 폐지시 거래세율 변화와 세수입 구성(2004년 기준) >

구 분		현 행				개정후		
		세 율		징수실적, 구성비 (억원, %)				
부동산 거래	주택	취득세 1% (농특세 포함 1.1%~1.3%)	합계 2.3%~ 2.7%	취득세 54,651 (38.4)	합 계 120,794 (84.9)	등록세 폐지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등록세 1% (지방교육세 등 포함 1.2~1.4%)						
	기타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합계 4.6%	등록세 66,143 (46.5)		등록세 폐지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등록세 2% (지방교육세 포함 2.4%)						
자동차거래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합계 4.6~ 8.2%	취득세 5,898 (4.2)	합 계 17,829 (12.6)	등록세 폐지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등록세 2~5% (지방교육세 포함 2.4~6%)		등록세 11,930 (8.4)				
법인등기 (설립 및 출자)		등록세 0.4% (지방교육세 포함 0.48%)	합계 0.48%	등록세 2,597 (1.8)	합 계 2,597 (1.8)	등록세 폐지		
건설기계 거래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합계 3.4%	취득세 645 (0.5)	합 계 1,011 (0.7)	등록세 폐지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등록세 1% (지방교육세 포함 1.2%)						
선박거래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합계 3.4%					등록세 폐지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등록세 1% (지방교육세 포함 1.2%)						
항공기거래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합계 0.012~ 0.024%	등록세 366 (0.2)		등록세 폐지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등록세 0.01~0.02% (지방교육세 포함 0.012~0.024%)						
기타 거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등록세 건당 4,500~75,000원	건당 4,500~ 75,000원			등록세 폐지		
합 계		-		취득세 61,194 (43.0)	합 계 142,230 (100.0)	등록세 폐지 취득세 현행유지		
				등록세 81,036 (57.0)				

※ 징수실적 및 구성비율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과 비율임

VI. 200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1.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문제

□ 정부안 주요 내용

-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 문제점

- 저출산 문제를 내세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이자, 저출산 문제를 조세제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발상

□ 한나라당 입장

- 정부안 반대 및 대안제시(인적공제 100만원 → 200만원으로 확대와 소득세율 인하)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및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 문제

□ 정부안 주요 내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정부제출, 2004년 6월 23일)과 연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비과세한도 축소(1인당 2천만원 → 1천만원) 등

□ 문제점

- 원칙적·장기적으로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농촌현실과 서민경제를 감안할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님

□ 한나라당 입장

- 현행 유지

3. 임시투자세액공제 문제

□ 정부안 주요 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보류 상태

□ 문제점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요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장기적으로 오히려 투자의 일관성을 저해함. 항시 제도로 유지하는 것도 옳지 않으므로 법인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한나라당 입장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문제

□ 정부안 주요 내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에서 일괄적으로 투자금액의 3%로 한정하여 일몰 연장
-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취득비용의 3%(중소기업 7%)에서 일괄적으로 취득비용의 3%로 한정하여 일몰 연장

□ 문제점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도 3%로 할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약화되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임

□ 한나라당 입장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현행(7%) 유지

5.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문제

□ 정부안 주요 내용

-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과약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미용·성형 수술비용 등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 문제점

- 정부가 나서서 미용·성형 수술을 권장하는 효과 발생 가능성
-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발급 의무화로도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과약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

□ 한나라당 입장

도입 반대

6.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문제

□ 정부안 주요 내용

-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 문제점

- 2005년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하향. 1년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직불(체크)카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

□ 한나라당 입장

대안제시(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7. EITC 도입 문제

□ 정부안 주요 내용

-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를 2008년부터 지급(단계적 적용범위 확대)

□ 문제점

- EITC는 2008년부터 시행할 지도 의문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EITC 제도에 대한 Delivery System이 합당한 수준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EITC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를 묶어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

□ 한나라당 입장

시기상조(전면 재검토)

8. 성실납세제도(간편납세제도) 도입 문제

□ 정부안 주요 내용

- 성실중소사업자에게 회계장부의무를 면제하고, 간소화된 전자장부 허용
- 감가상각비 강제상각, 정액법·내용연수 단일화, 접대비·기부금 한도화

□ 문제점

- 지나친 간소화와 자율화를 통해 탈세, 회계처리 경직성 문제 발생
- 부가가치세의 세원관리 개선을 통한 공평과세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함

□ 한나라당 입장

근거과세기반의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함

〈별첨〉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활동상황(2006. 8~)

○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6. 8. 25(금) 10:00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
- 주요 내용 :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경과보고 및 향후 활동 방향

○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6. 9. 1(금) 08:00 국회본청 귀빈식당
- 주요 내용 :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및 한나라당 조세정책 논의

○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6. 9. 14(목) 14:0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토론회명 :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 주요 참석자: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나성린 한양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교수,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현진권 아주대 교수 등

○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1차 연석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6. 9. 22(금) 08:30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요 내용 : 한나라당 조세정책 논의

○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2차 연석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6. 10. 10(화) 08:00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요 내용 : 한나라당 조세정책 논의 및 추진 방향 점검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의원 명단(2006. 11. 10 현재)

이름	상임위	비고
윤건영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권경석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	산업자원위원회	제1정조위원장
김애실	정무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정무위원회	
최경환	재정경제위원회	